



제 434회 국회 (임시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수산부산물 분리배출 지원 내용 구체화 및 지원
사항에 대한 안내 의무 〉

■ 이종욱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7575호

2026. 4.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김 성 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수산부산물 분리배출 지원 내용 구체화 및 지원 사항에 대한 안내 의무	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종욱의원 등 13인

2. 제 안 일 : 2026. 3. 18.

3. 회 부 일 : 2026. 3. 1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산부산물을 친환경적·위생적으로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산부산물분리배출의무자의 분리배출 의무를 규정하고, 시·도지사가 분리배출을 위한 시설구축·인력고용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굴·조개 등 패각은 특정 지역에서 단기간 내에 대량으로 발생하여 적치·악취로 인한 민원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의 해결을 위해 수산부산물 분리배출 현장에서는 패각처리차량 운행 증편과 공동집하장 설치 등과 같은 실질적 해결책이 요구됨에도 현행법은 수산부산물 분리배출에 관한 지원 내용을 시설구축·인력고용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그 지원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시·도지사가 수산부산물 분리배출 기준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에게 이행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수산부산물 수거·운반 여건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치명령이 내려질 경우 어업인에게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수산부산물 분리배출 여건 조성을 우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수산부산물 분리배출을 위한 지원 내용을 공동집하장 설치·운영 및 수산부산물 수거·운반과 같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시·도 지사가 조치명령을 하기 전에 수산물분리배출의무자에게 수산부산물 분리배출과 관련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을 안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 후단 신설 및 제8조제1항).

Ⅲ. 검토의견

1. 수산부산물 분리배출 지원 내용 구체화 및 지원 사항에 대한 안내 의무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시·도지사가 수산부산물 분리배출의무자에게 이행명령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경우 수산부산물 분리배출 시설 지원 사항에 관한 내용을 안내하도록 의무화하고,

수산부산물 분리배출 시설에 관한 사항을 공동집하장 등 수산부산물 분리배출 시설의 설치·운영에 드는 비용과 수산부산물의 수거·운반 등 수산부산물 처리를 위한 인력고용에 드는 비용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7조 및 제8조).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수산부산물 분리배출 의무 등) ① · ② (생략)	제7조(수산부산물 분리배출 의무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지키지 아니하는 수산부산물분리배출의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명령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③ ----- ----- ----- ----- ----- 이 경우 수산부산물분리배출의무

제8조(수산물부산물 분리배출 시설 지원) ① 시·도지사는 수산물부산물의 분리배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산물부산물 분리배출의무자에게 수산물부산물을 분리배출하기 위한 시설구축·인력고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② (생 략)	자에게 제8조에 따른 지원 사항에 관한 내용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8조(수산물부산물 분리배출 시설 지원) ① -----다 ----- -----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1. 공동집하장 등 수산물부산물 분 리배출 시설의 설치·운영에 드 는 비용 2. 수산물부산물의 수거·운반 등 수산물부산물 처리를 위한 인력고 용에 드는 비용 ② (현행과 같음)
---	---

나. 검토의견

- ☐ 현행법¹⁾은 수산물을 포획·채취·양식·가공·판매하는 자 중에서 수산물부산물을 연간 10톤 이상 배출하는 자로서 수산물로부터 수산물부산물을 분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작업장을 보유한 자와 「수산물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한 수산물가공업 시설을 보유한 자를 수산물부산물 분리배출의무자²⁾로 규정하고, 수산

1) 「수산물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수산물부산물 분리배출 의무 등) ① 수산물을 포획·채취·양식·가공·판매하는 자 중에서 수산물부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수산물부산물분리배출의무자”라 한다)는 수산물부산물을 다른 폐기물과 분리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부산물을 다른 폐기물과 분리하여 배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시·도지사는 분리배출의무를 지키지 아니하는 수산부산물분리배출 의무자에게 배출기준·준수사항의 이행명령 또는 개선명령 등의 조치³⁾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분리배출의무를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이행명령 등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시·도지사는 수산부산물의 분리배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산부산물분리배출의무자에게 수산부산물을 분리배출하기 위한 시설구축·인력고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⁵⁾, 구체적인

2)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수산부산물 분리배출의무자)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정방법에 따라 산출한 수산부산물을 연간 10톤 이상 배출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수산물로부터 수산부산물을 분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작업장(육상에서 분리작업을 하기 위하여 설치된 작업장이나 해상에서 분리작업을 하기 위하여 고정적으로 설치된 작업대를 말한다)을 보유한 자
2.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수산물가공업 시설을 보유한 자

3)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분리배출의무자에 대한 이행명령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분리배출의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명령을 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에 따른 배출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 배출기준의 이행명령 또는 개선명령
 2. 제5조제2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준수사항의 이행명령 또는 개선명령
-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분리배출의무자에게 조치명령을 하려면 해당 분리배출의무자가 이행해야 할 구체적인 조치사항 및 이행기간 등을 적어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지해야 한다.

4)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과태료) ①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산부산물을 다른 폐기물과 분리하지 않고 배출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수산부산물 분리배출 시설 지원) ① 시·도지사는 수산부산물의 분리배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산부산물분리배출의무자에게 수산부산물을 분리배출하기 위한 시설구축·인력고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사항에 대해서는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굴·조개 등 패각은 대량으로 발생⁶⁾하여 적치·악취로 인한 민원이 반복되고 있는데, 해양수산부는 현행법에 따른 법정계획⁷⁾인 「제1차 수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⁸⁾(2023.1.)을 통해 수산부산물 분리배출 체계가 현장에서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분리배출의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며, 공동집하장과 같은 지역단위 분리배출 시설을 확충하겠다는 계획⁹⁾이나,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분리배출의무자에 대한 지원) ① 시·도지사는 분리배출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해당 분리배출의무자에게 수산부산물을 분리배출하기 위한 시설(이하 이 조에서 “분리배출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거나 해당 시설 관리 인력을 고용하는 데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분리배출의무자가 구성원으로 속해 있는 생산자단체(「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의 생산자단체를 말한다)의 다른 구성원들과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분리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해당 분리배출시설의 관리 인력을 고용한 경우
2. 둘 이상의 분리배출의무자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분리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해당 분리배출시설의 관리 인력을 고용한 경우

② 분리배출의무자에 대한 제1항의 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6) 최근 5년간 평균 굴 패각 발생량을 추정하면, 26만톤에서 30만톤으로 추정되며, 경상남도 내부 자료에 의하면 경남지역에서 발생한 굴 껍데기 중 약 5만톤이 방치되고 있다.

우희은 등, 「굴 박신장에서 발생하는 굴 껍데기의 특성 연구」,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지)(2025.02.), p. 31

7)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수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부산물을 친환경적이고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수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8) 「제1차 수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주요내용)

■ 수산부산물 재활용률 30% 목표('27년까지)

- (환경은 살리고) '20년 재활용률 19.5% → 순환이용 중심으로 전환
- (가치는 높이고) 비료·사료 위주 재활용 → 기능성 식품·화장품 등 고부가 소재로

■ 자원순환 기반-연구-생태계 등 산업 육성에 총 1천억 원 투자

- (기반) 분리배출 인센티브 제공, 대규모 전처리·자원화 시설 구축
- (연구) 자연 해안선·인공어초 조성 등 다양한 실증 연구 추진
- (생태계) 탄소배출권 거래 지원 등 재활용 신산업 육성

9) 「제1차 수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 세부추진과제」

현행법은 수산부산물 분리배출에 관한 지원 내용을 시설구축·인력고용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그 지원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으며, 지원 사항에 대한 안내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 개정안은 수산부산물 분리배출을 위한 지원 내용을 공동집하장 설치·운영 및 수산부산물 수거·운반과 같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시·도지사가 조치명령을 할 경우 수산부산물 분리배출의무자에게 수산부산물 분리배출과 관련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을 안내하도록 하여 수산부산물 분리배출에 대한 의무 이행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입법필요성이 있음.

□ 다만, 「폐기물관리법」 등 유사 법령에서도 지원에 관한 사항은 국가 및 지자체 등의 지원 의무를 규정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하위법령에 위임¹⁰⁾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세부 추진 과제 >

① (발생) 수산부산물 분리배출 확대

- 우선, 부류별 재활용 여건과 현장 수요를 감안하여 「수산부산물법」의 적용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수산부산물의 분리배출을 확대할 계획,
- 수산부산물 분리배출 체계가 현장에서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분리배출의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
- 공동집하장과 같은 지역단위 분리배출시설을 확충하고, 수협 등 생산자단체가 영세어업인의 분리배출업무를 위탁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

10) 「폐기물관리법」

제56조(국고 보조 등) 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제55조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고려할 수 있다.

제57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설치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29조(행정적·재정적 및 기술적 지원)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 수산부산물 분리배출의무자에 대한 비용 지원 관련 조례 현황 >

경상남도	전라남도	충청남도	부산광역시	제주
• 수산부산물의 수집 · 운반 및 처리 • 수산부산물 재활용 관련 기술의 연구 · 개발 및 보급 • 수산부산물 재활용 제품의 개발 및 판로 확대 • 수산부산물 분리배출시설의 설치 · 운영 등	• 수산부산물의 수집 · 운반 및 처리 • 수산부산물 재활용 관련 연구, 기술 개발과 보급 • 수산부산물을 이용한 재활용 제품의 개발 및 판로 확대 • 수산부산물 자원화 시설의 설치·운영 • 수산부산물 분리배출 시설 설치·운영 등	• 수산부산물의 수집 운반 및 처리 • 수산부산물 재활용 관련 연구, 기술개발과 보급 • 수산부산물을 이용한 재활용 제품의 개발 및 판로확대 • 수산부산물 자원화 시설의 설치·운영 등	• 수산부산물의 수집 · 운반 및 처리 • 수산부산물 재활용 관련 연구, 기술개발 및 보급 • 수산부산물 재활용 제품의 개발 및 판로 확대 • 수산부산물 분리배출 시설의 설치·운영	• 도지사의 자원 의무안 규정

또한, 수산부산물 분리배출 지원 사항을 이행명령 시 안내를 하도록 의무화하려는 안 제7조와 관련하여, 현행 법령 체계상 분리배출 시설 지원을 규정하고 있는 제8조에 규정하는 편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며, 수산부산물의 분리배출을 촉진하기 위한 개정안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지원 사항에 대한 안내 규정은 분리배출의무자의 이행명령 시로 한정하기 보다는 수산부산물 분리배출 시설 지원 관련 사항을 안내 및 홍보를 하도록 하는 일반적인 의무사항으로 규정하는 방안

-
2. 제11조에 따른 폐기물의 해양유입 차단조치
 3.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양폐기물의 수거
 4. 제15조에 따른 선박 및 시설 등의 건조·설치 및 운영
 5. 제15조의2에 따른 바다환경지킴이의 채용·운영
 6. 제16조에 따른 해양오염퇴적물의 정화
 - 6의2. 제17조에 따른 해양오염퇴적물 정화사업이 완료된 해역의 사후관리
 7. 그 밖에 수거한 해양폐기물의 처리에 필요한 조치
 - ② 국가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감시활동, 수거·정화 활동 등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섬 지역에서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0.>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의 대상·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해양수산부는 수산부산물 분리배출을 위한 지원내용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내용에 대하여는 법령에서 국가 및 지자체 등의 지원 의무를 규정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며,

분리배출의무자에게 조치명령 시 지원 사항에 관한 내용을 안내하도록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안내가 필요하다는 입법취지에는 공감하나, 유사 법령의 사례¹¹⁾를 고려할 때 조치명령을 규정한 안 제7조제3항 후단에 안내 의무 규정을 신설하기보다는 지원 사항을 규정한 제8조에서 규정하는 방향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 한편, 개정안에 대해서는 「국회법」 제79조의2제1항에 따라 비용추계요구서가 제출된 상태로, 재정소요와 관련하여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가 첨부될 예정임(추후 관련 내용 보완 예정)¹²⁾.

문 의 처

02)6788-5419

11) 「폐기물관리법」,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등에는 조치명령 전 지원사항 안내에 대한 별도 규정은 부재

12) 국회예산정책처는 의원 또는 위원회가 요구한 비용추계에 대하여, 법안의 내용에 따라 ①비용추계서, ②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③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로 구분하여 작성·회답함. 비용추계서는 재정이 수반되고 소요 비용의 추계가 가능한 법안, 미첨부 사유서는 재정이 수반되기는 하지만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운 법안, 미대상 사유서는 시행되더라도 재정이 수반되지 않거나 재정부담에 변화가 없는 법안에 대하여 작성됨(국회예산정책처, 법안비용추계 이해와 실제, 2024, p. 29)